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천준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893

발의연월일: 2024. 8. 16.

발 의 자:천준호·이병진·김현정

박상혁 • 안도걸 • 문진석

윤종군ㆍ허 영ㆍ이강일

이해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미등록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한 경우 등록대부업자와 같이 초과분에 대한 이자계약을 무효로하고,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을 원본에 충당하되,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 행위를 하는 불법사채 범죄는 개인의 인생을 저당잡아 악질적 수단으로 불법 추심하거나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사실상 인신매매와 다름없는 반사회적 범죄로, 그계약을 원천 무효화하여 해당 범죄의 경제적 유인이 없도록 규제해야할 필요가 있음.

타 입법례로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의 경우에 도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을 원천 무효화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면, 민법에서 규정하는 사인 간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개별법에서 계약을 무효화 하는 것이 가능함.

이에 미등록대부업의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 전부를 무효화 하고 지급된 원금 및 이자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동시에, 불법 대부행위의 벌금형을 상향하여 금전적 유인을 차단하고 범죄 적발 시 엄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11조및 제19조 등).

법률 제 호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 제목 중 "이자율 제한"을 "계약 금지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「이자제한법」 제2조제1항 및 이법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"를 "경우 그 금전소비대차 약정은 전부 무효로 한다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.

③ 미등록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본과 이자를 청구할 수 없고, 채무자가 미등록대부업자에게 원본 또는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
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5천만원"을 "5억원"으로 하고, 같은 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3천만원"을 "3억원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"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"을 "제8조에 따른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적용례)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부계약을
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미등록대부업자의 <u>이자율</u>	제11조(미등록대부업자의 <u>계약</u>
<u>제한</u>) 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	급지) ①
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	<u>경우 그 금전소비대</u>
하여는 「이자제한법」 제2조	차 약정은 전부 무효로 한다.
제1항 및 이 법 제8조제2항부	
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	
<u>다</u> 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미등록대부업자가 제1항을
	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
	경우 원본과 이자를 청구할 수
	없고, 채무자가 미등록대부업자
	에게 원본 또는 이자를 지급한
	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
	<u>다.</u>
제19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	제19조(벌칙) ①
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	
이하의 징역 또는 <u>5천만원</u> 이	<u>5억원</u>
하의 벌금에 처한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②
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	
역 또는 <u>3천만원</u> 이하의 벌금	<u>3억원</u>

- 에 처한다.
- 1. ~ 2. (생 략)
- 3. <u>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</u> <u>따른</u>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 를 받은 자
- 4. ~ 10. (생 략)
- ③ (생 략)

- _____
- 1. ~ 2. (현행과 같음)
- 3. <u>제8조에 따른</u> -----
 - _____
- 4. ~ 10. (현행과 같음)
- ③ (현행과 같음)